

제314회 임시회  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
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00111호)



2022. 9.

서울특별시의회  
남궁역의원(국민의힘, 동대문3)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부위원장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,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,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, 야생생물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7조),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19조),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제21조),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~제26조)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